

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[] 신고서
[]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고인	① 상호 (명칭)	한글	②사업자등록번호
		영문	
	③ 성명 (대표자)	한글	④생년월일
		영문	
	⑤ 담당자	성명	
		연락처	
	⑥ 주소(사업장)		(전화번호:)
⑦ 발생공정			

신고 내용

⑧ 수출예정일(수출예정월)	⑨ 국내 선적항	⑩ 수입국(경유국)	⑪ 단일 또는 포괄여부				
⑫ 폐기물	⑬ 성질· 상태	⑭ HSK No. (10자리)	⑮ 수출량 (톤)	⑯ 운반		⑰ 처리	
				종류	분류번호	운반자	운반종류
⑱ 변경사항	변경 전			변경 후			
⑲ 변경사유							

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·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(변경)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수출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.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(F.O.B.)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.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·운반수단·운반업자·운반일정·보관장소·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다.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(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라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마.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,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 (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바.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사.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폐기물의 수출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마목에 따른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전단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2.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원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요령

- ⑦란은 수출하려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⑧란은 포괄수출의 경우 최초 선적일과 최종 선적일을 모두 적습니다.
- ⑩란은 수입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.
- ⑪란은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.
- ⑫란의 종류란에는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, 분류번호란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 분류번호(세분류 번호)를 적습니다.
- ⑬란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에 따른 분류번호(고체상태=1, 액체상태=2)을 적습니다.
- ⑭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K No.: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)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.
- ⑮란은 수출계약서 등에 따른 수출예정량을 적되,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 예정량을 적습니다.
- ⑯란의 운반차량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"자가"로 적고,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, 운반종류란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에 따른 분류번호(트럭/컨테이너=1, 탱크로리=2, 기타=3)를 적습니다.
- ⑰란의 업소명란에는 수입국의 처리업체 명칭을 영문으로 적고, 처리방법란에는 아래 비고에 따른 처리분류와 세분류번호를 모두 적습니다.
-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.

※ 비고: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

처리구분	처 리 방 법	
	처리분류	세분류 번호
자가처리	재 활용	원형 재사용[1001], 수리·수선 재사용[1002], 원료 제조[1003], 직접 제품제조[1004], 농업생산활동에 사용[1005], 토질개선에 사용[1006], 성토재·복토재 등으로 사용[1007], 직접 에너지회수[1008], 연료·고형연료제품 제조[1009], 중간가공폐기물 제조[1010]
	중간처분	일반소각[1101], 고온소각[1102], 열분해[1103], 고온용융[1104], 압축[1105], 파쇄·분쇄[1106], 절단[1107], 용융[1108], 증발농축[1109], 유수분리[1110], 탈수·건조[1111], 멸균·분쇄[1112], 고형화[1113], 안정화[1114], 소멸화[1115], 중화[1116], 기타[1117]
	매립	관리형 매립시설[1201], 차단형 매립시설[1202], 기타 매립시설[1203]
	해역배출	[1300]
	수출	[1500]
위탁처리	재 활용	원형 재사용[2001], 수리·수선 재사용[2002], 원료 제조[2003], 직접 제품제조[2004], 농업생산활동에 사용[2005], 토질개선에 사용[2006], 성토재·복토재 등으로 사용[2007], 직접 에너지회수[2008], 연료·고형연료제품 제조[2009], 중간가공폐기물 제조[2010]
	중간처분	일반소각[2101], 고온소각[2102], 열분해[2103], 고온용융[2104], 압축[2105], 파쇄·분쇄[2106], 절단[2107], 용융[2108], 증발농축[2109], 유수분리[2110], 탈수·건조[2111], 멸균·분쇄[2112], 고형화[2113], 안정화[2114], 소멸화[2115], 중화[2116], 지방자치단체 소각[2117], 국가 소각[2118], 기타[2119]
	매립	민간관리형 매립시설[2201], 민간차단형 매립시설[2202], 기타 매립시설[2204],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[2205], 국가 매립시설[2206]
	해역배출	[2300]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 : 유역(지방)환경청장